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55호 2024. 7. 19.(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1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52호, 2024. 6. 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1항의 별표 1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의 수입금출납원란 중 본청, 제1관서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신설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4년 8월 9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5021,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52호, 2024. 6. 1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1항의 별표 1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의 수입금출납원란 중 본청, 제1관서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별첨(「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수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 세외수입업무 주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서무업무담당	-	각 과·지소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관계 자치법규 발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시·군·자치구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시·군·자치구				세외수입 수입금출납원 관직 구체적 명시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재관서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재관서	
회계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	-	회계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	-	
징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징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분임징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 세외수입업무담당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과장 	분임징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 세외수입업무담당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의장 (본청 알선장하등이 경우 분임재무관) 	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본청 알선장하등이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 각실·과장 알선장하등이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알선장하등이 경우 알선장하등 출납원) ▪ 각실·과재관서 알선장하등이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우 	분임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 각실·과장 알선장하등이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알선장하등이 경우 알선장하등 출납원) ▪ 각실·과재관서 알선장하등이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우 	
총괄재무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총괄재무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채권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총괄부채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총괄부채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부채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부채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실·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과장 ▪ 관서의장 	
총괄기금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총괄기금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통합지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	-	통합지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의사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지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의사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업무담당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등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실·과사무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실·과사무업무담당 	일상경비등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실·과사무업무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실·과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인원금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인원금출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예산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예산금출납원 실무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예산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예산금출납원 실무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